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23호
- 나. 제안자 : 유용 의원(찬성의원 10명)
- 다. 제안일자 : 2019년 3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를 감축시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 서식을 규정함(안 제10조3제2항, 별표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감축으로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제도(이하 “고용보험”)는 5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사업주)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됨.
- 그러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인해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노동자 가입률(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¹⁾.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액 등급에 따라 1~2등급에는 보험료의 50%를, 3~4등급에는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1)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복지공단

- 서울시도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기준보수등급과 무관하게 기존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30%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2019년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	-	-
	서울시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610
	자영업자 부담액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8,590

- 2019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납부기일 1개월 내에 신청 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환급할 계획임²⁾.

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서류 명시 (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 안 제10조의3제2항은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2019년 3월 27일부터 지원 사업 공고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 이 중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³⁾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 서류를 감축시켜 대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금융정보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⁴⁾에 따라 본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원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구비서류)를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 등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필요한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처리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행정내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4)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8.(생략)

개정안	수정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意的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 <input type="checkbox"/> 여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번호 :</p> </div> <p style="text-align: right;">민원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p> <p>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意的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p> </div> <p style="text-align: right;">민원인 (서명 또는 인)</p> <p>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민원인 (서명 또는 인)</p>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삭제
 7.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 동의서의 유효기간